





보도자료



보도 **2016.9.30.(금) 조간** 배포 2016.9.29(목)

책 임 자	금융위 보험과장 손 주 형(02-2100-2960)		현 지 은 사무관 (02-2100-2964)	
	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송 영 상(02-3145-8730)	담당자	장 동 E (02-3145	

제 목 :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」, 보험사기 뿌리뽑겠습니다.

- ◇ 보험사기죄 신설 및 보험사기 처벌 강화
- ◇ 보험금 지급 지체·거절·삭감시 과태료 부과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
- ◇ 보험사기 예방 IT인프라 「보험사기 다잡아」 출범(10.4일)

I 추진 배경

- □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,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범죄
- 보험사기 적발규모^{*}는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, '14년 한해동안 **총4조 5천억원, 가구당 23만원 및 1인당 8.9만원**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(보험연구원, '16.9.26)
- * 보험사기 적발규모(억원): ('13)5.190 → ('14)5.997 → ('15)6.549 → ('16상)3.480
- 최근에는 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**직무관련자가 가담**한 **조직적**· **지능적 보험사기**로 진화하는 경향
 - * (사례1) 서울 H의원 병원장 A는 브로커 B(前 보험설계사, 46세)를 고용하여 환자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, 환자들과 공모 후 미용시술을 시행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
 - 환자들(113명)은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근거로 **4억 3천만원의 실손 보험금**을, 병원장 A는 의료법상 금지된 네트워크병원 6개소를 운영 하여 **2년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8억2천만원을 부당편취**

- * (사례2) A씨는 자신의 지인 B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해줄 것을 청부하여 **사망보험금 약 17억원 편취 시도**
- A씨는 남편 몰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을 남편에게 들키면 힘들 것 같아 남편을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 결과 남편 사망시 지급되는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해로 확인
- * (사례3)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중고부품으로 교환 수리하고 순정부품으로 한 것처럼 **허위견적서를 작성**하거나 파손되지 않은 부위를 **확대수리하여 견적을 과장**하는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**3억2천5백만원 상당을 편취**
- □ 한편, 부당한 사유로 **보험금 지급을 지체, 삭감, 거절**하는 보험 회사의 행태에 대한 **소비자 불만과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**
 - * 보험금 산정·지급 민원 건수(비중): ('14)15,174건(19.3%) → ('15)16,221건(22.2%)
 - * (사례) A는 무지외반증 수술을 한 후 2개월이 경과하여 다시 **내고정물** 제거 수술을 하고 보험회사에 질병수술비를 청구
 - •보험회사는 내고정물 제거술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
 -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정한바에 따라 내고정물 제거술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하도록 조정
- □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(3.29일)된 「**보험사기방지** 특별법」(이하 '특별법')이 **금일 시행**
- **금융위·금감원**은 특별법 시행을 바탕으로 **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**을 기울임과 동시에,
-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소비자의 권익도 **철저하게 보호**해 나갈 예정

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주요내용

П

① 보험사기행위 정의 신설 및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

- (현행)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보험사기의 처벌수위가 일반 사기범죄보다 경미하여, 보험사기가 중대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되는 문제
- * ('12년 보험사기) 징역 13.7%, 집행유예 17.6%, 벌금 68.7% ('12년 일반사기) 징역 46.6%, 집행유예 27.3%, 벌금 26.1%
- (개선) 보험사기행위* 및 보험사기죄 신설하여 10년이하 징역
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부과(특별법 제8조)
 - * (특별법 제2조) 보험사고의 발생,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
- 형법상 사기죄보다 **벌금을 강화(2천만원 이하→5천만원 이하)** 하여 **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 기대**

② 보험금 지급 지체·삭감·거절시 보험회사 제재 강화

- (현행) 기초서류(약관)를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소지급·미지급할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 20%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(보험업법 제1%조)
- 과징금이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책정되어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대비 제재수준이 미흡하며,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지체의 경우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맹점
- (개선) 보험금 지급 지체·거절·삭감을 금지하고, 위반시 건당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(특별법 제5조, 제15조)
 - (i)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·거절·삭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(위반시 과태료 부과)

- (ii) **약관** 등에 따른 경우 등 **예외적 경우***에만 동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**과태료 未부과**
- * ①약관 및 다른법령에 따른 경우, ②합당한 근거가 있어 보험사기의심행위를 금융위원회에 보고(특별법 제4조) 또는 수사당국에 고발 등 조치(특별법 제6조)를 취한 경우, ③소 제기 등의 경우(단, 부당한 목적의 남소 등은 제외)
- ※ 예외적 경우에도, 충분한 근거 없는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
- ▶ 보험회사가 **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'합당한 근거'를 충분히** 갖고 금융위에 보고 또는 수사당국에 고발 등을 한 경우에만 **과태료 未부과**
- → 사후적으로 '합당한 근거'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, 과태료 부과 대상
- ▶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소 제기 등을 한 경우^{*} 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
- *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의 지체 또는 보험금의 감액·청구권의 포기 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(訴)·조정의 제기
- (iii) **과태료 미부과 대상**인 경우에도, 약관과 법령에 따른 보험 소비자의 **민사적 보험금 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**
 - * (예시)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나, 약관상 지급 거절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
 - → 특별법상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약관 위반에 따른 보험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며, 소비자는 민사소송·조정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

③ 보험사기 조사·수사 관련 업무절차 등 제도적 기반 마련

- (현행) 보험사기 조사·수사는 수사당국(점·경), 금융당국(금융위·금감원), 보험회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양한 기관의 협업이 필수적 이나, 명확한 법적 절차 부재
- (개선)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의심행위 보고(특별법 제4조),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(특별법 제6조)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(특별법 제7조) 등 보험사기 조사・수사 업무절차 명확히 규정

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향후 계획

① (홍보)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

- 소비자에게 친숙한 **웹툰*·이모티콘**을 홍보에 활용(10월), **보험사기에**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등 홍보 추진
 - * 보험사기 예방 웹툰 주제 예시
- 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
- ② 실손의료보험 부당편취 관련 보험사기 사례(허위, 과장 의료행위 등)
- ③ 보험사기 제보하고 포상금 받아가자
- ④ 자동차보험 부당편취 관련 보험사기 사례(과잉수리, 고의접촉, 음주·무면허 관련 등)

② (보험사기방지 IT인프라) 한국신용정보원의 「보험사기 다잡아」 가동 개시(10.4일) ※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상세 보도자료 별도 배포

- 보험협회·보험개발원 등에 흩어져 있던 보험계약·공제 정보를 「보험사기 다잡아」 시스템에 모아 보험회사·공제기관이 보험 계약 체결,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활용
- 보험계약 인수 심사,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가입, 보험금 청구/ 지급 정보 등을 바탕으로 (i)다수 · 고액보험의 가입 시도를 인지·차단, (ii)허위 · 반복 보험금 청구 의심건 적출 등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
- '17년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계기반의 보험사기 예측 모델 도입 등 「보험사기 다잡아」 업그레이드 추진

③ (적발·처벌) 보험사기 적극적으로 적발하여, 특별법에 따라 엄벌

- 현재 보험사기 **특별단속이 실시**(7~10월)되고 있으며, 수사당국은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시행에 따라 더욱 단속과 처벌을 강화
-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의 최고지급한도를 확대(5억원→10억원, 7월
 시행)하여, 국민과 협업하여 보험사기를 적발
 - * '16상반기 신고포상금 2,145건, 8.9억원 지급

④ (소비자보호) 연말까지 보험금 지급지체·거절·삭감 신고 집중접수

- 금융감독원 **금융민원센터(1332)**를 통해 **연말까지 보험금 지급** 지체·거절·삭감 관련 신고·상담 집중접수기간 운영
 - * 보험사기 관련 대국민 홍보시, 금융민원센터 신고 관련 내용 안내
- 동 기간 접수된 민원 중 관계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, 향후 금감원 검사시 중점점검사항으로 관리

IV

기대 효과

- □ (보험사기 방지)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로로 대납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
- 보험금 누수 방지가 **저렴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출시**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의 선택권과 혜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
- □ (소비자보호 강화) 보험금 지급 지체・거절・삭감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여,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



 ▼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 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